

교원양성위원회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
- ②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본 대학교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 기준의 세부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기독교교육과 학과장, 유아교육과 학과장, 신학과 학과장, 보육학과 학과장, 교직담당교수로 한다.
- ④ 외부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위원회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기타)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 한다.